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인선정 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of Arbitrator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신군재*
Koon-Jae Shin

〈목 차〉

- I. 서 론
- II. 선행연구검토
- III. 중재인의 기피
- IV. 중재인 선정방식의 장단점 분석
- V. 결 론

주제어 : 중재인 기피, 중재인 선정, 당사자에 의한 선정, 중재기관에 의한 선정, 국가법원에 의한 선정

* 신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skj0911@silla.ac.kr

I. 서 론

국제통상환경의 ‘Globalization’은 ‘무국경화’, ‘디지털화’, ‘소비자중심’으로 경제환경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 경제는 EU 및 각 국과의 지속적인 FTA를 추진하는 등에 힘입어 2008년도 무역의존도가 92.3%에 달하고 2009년도에는 수출규모가 세계 9위에 달하였다¹⁾. 이러한 무역규모의 증가는 자연히 국가와 각 경제 분야를 막론하고, 분쟁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2006년도 클레임실태 조사에 의하면, 수출업체의 44.8%가 수입업체의 42.4%가 클레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판매증대를 목적으로 한 마케팅활동만을 매우 중요시한 반면에 기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계약과 분쟁에 대하여는 매우 등한시한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이 클레임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재는 New York Convention에 의하여, 국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며,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소송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중재는 당사자 자체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로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준거법, 중재기관뿐만 아니라, 중재절차 및 중재인을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가 있다. ‘당사자자치원칙’에 의하여 중재에서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나 중재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합의하여야만 한다. 중재조항이든 중재부탁이든 중재합의서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명시되어야만 한다³⁾. 당사자들이 합의하여야 하는 여러 사항 중 중재인 선정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무역분쟁에서 중재의 성공여부는 중재인의 질에 달려있으며⁴⁾, 또한 사안의 복잡성, 공정성의 문제 등으로 국제중재보다 당해 사건에 적합한 중재인을 선정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⁵⁾.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분쟁의 종류와 중재인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등 어떤 중재인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다 신중히 고려를 하여야 한다. 국제중재에서 중재인 선정은 2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정된 중재인이 이를 수락하는 것이다⁶⁾.

1) 한국일보, “‘세계 무역 8강’, 내실 갖춘 목표 달성을”, 2009.12.1. 39면 및 “내년 5% 성장, 지나친 낙관 경계 해야”, 2009.12.5 31면.

2) 산업자원부·한국무역협회·대한상사중재원, 「2006년도 무역클레임 실태조사」, 2006.10, p.4.

3) Orkun Akseli, "Appointment of Arbitrators as Specified in the Agreement to Arbitrate",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20 No.3, 2003, p.248.

4) ibid., p.247.

5) Douglas Earl McLaren, "Party-Appointed vs List-Appointed Arbitrators : A Comparison",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20, No.3,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p.233.

6) Orkun Akseli, op., cit., p.248.

본 연구에서는 중재인선정방식을 당사자에 의한 선정, 중재기관에 의한 선정 및 국가법원에 의한 선정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방법들의 장단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검토

중재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중재인의 권한,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 중재인의 기피, 중재인 제도의 국제간 비교, 및 중재인 선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중재인의 권한에 관한 연구는 중재인이 중재합의의 유효성이나 그 중재합의의 대상범위를 스스로 판정할 수 있는 가를 살펴본 연구로서, 안병희(2001)⁷⁾, 이상옥(2004)⁸⁾ 및 이강빈(2008)⁹⁾의 연구가 있다. 김경배(2008)는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곧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중재제도의 신뢰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취지에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공정한 중재판정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재인기피에 관한 연구로는 주기종(1999)¹⁰⁾, 이명우¹¹⁾(2004)와 정선주¹²⁾ 등이 있다. 한편, 중재인 선정에 관한 연구로는 최혁준(2006)¹³⁾, 김용일 · 하명근(2006)¹⁴⁾ 및 Miles(2002)은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하여 외국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국제간 비교 분석하였고, 오원석 · 김용일(2007)¹⁵⁾ 및 오원석 · 안건형(2008)¹⁶⁾은 ICC중재에서 중재인 선정방식을 고찰하였으며, 강수미(2008)¹⁷⁾는 한 사안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다수 당사자가 하나의 중재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다수당사자중재에 있어서 중재인선정방법을, 조정곤(1993)¹⁸⁾은 중재인선정모형을 통해 중재인 선정문제를, 그리고 신군재(2009 a, 2009 b)¹⁹⁾는 중재인의 분야별 특성 및 한 · 중간 중재인제도를 비교 · 분석

- 7) 안병희, “중재인의 권한확정권한(Kompetenz-Kompetenz)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1권, 한국중재학회, 2001, pp.95-120.
- 8) 이상옥, “국제중재법규상의 중재인선정계약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중재권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4, pp.195-212.
- 9) 이강빈,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의 권한과 임시적 처분에 관한 연구”, 강수미, “다수당사자중재에 있어서 중재인선정방법”, 「중재연구」 제18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8.8., pp.103-128.
- 10) 주기종, “중재인의 독립성 · 공정성과 당사자의 기피”, 「법학논집」 Vol.15,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pp.131-146.
- 11) 이명우, “중재인의 기피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3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8.8., pp. 103-128.
- 12) 정선주, “중재인에 대한 기피”, 「중재연구」 제17권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7.3. pp.33-56.
- 13) 최혁준,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비교 연구-외국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16권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6.3. pp.187-218.
- 14) 김용일 · 하명근,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인 선정에 관한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9., pp.207-228.
- 15) 오원석 · 김용일, “ICC중재에 중재인 선정과 확인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3., pp.23-42.
- 16) 오원석 · 안건형, “ICC중재서 중재법원의 제3중재인 선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8, pp.1-23.
- 17) 강수미, “다수당사자중재에 있어서 중재인선정방법”, 「중재연구」 제18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8.8. pp.79-102.
- 18) 조정곤, “상사중재에서의 중재인선정과 전략개입”, 「중재학회지」 제3권, 한국중재학회, 1993, pp.17-67.

하였다. Miles(2003)은 중재인의 지명에 대한 실무적 문제점을 제기하였고²⁰⁾, Moxley(2005)²¹⁾는 이상적인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III. 중재인의 기회

1.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재인이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중재판정을 내리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사인(私人)인 제3자를 말한다. 중재인의 권한은 중재합의와 중재절차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부여할 수 있으며, 양자가 저촉되는 경우 중재절차의 준거법이 적용된다²²⁾. 중재인은 당사자가 중재권한을 다툴 때 중재인 스스로가 그 중재권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권한을 심사할 권리와 중재절차진행권한 및 중재판정권한을 갖는다. 한편, 중재인의 주요 의무로는 고지의무, 공정의무, 성실의무 및 비밀준수의무 등이 있다.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원칙이다. 중재인은 공정하고(impartiality), 독립적(independent)이며, 중립적(neutral)이어야 한다. 중재인의 사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중재인이 몇 명이 되건 중재인은 공정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²³⁾. 다만 모든 입법례가 “중재인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시킬 만한 사유(whether circumstances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bout the arbitrator's impartiality)”와 같이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국제변호사협회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의 윤리장전(IBA Ethics for International Arbitrators)’에서도 ”중재인은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규정²⁴⁾하고 있어 어느 경우가 편파적이고 어떠한 이해관계가 공정성을 해치는 이해관계인지에 관하여서는 분명하지 않다²⁵⁾.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나 LMAA(The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19) 신군재, “중재인선정 및 분야별 중재인 특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9. 12., pp.142-160. 및 “한국과 중국의 중재인제도 비교분석”, 「국제상학」, 제24권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9.12., pp.207-225.

20) Wendy Miles, “Practical Issues for Appointment of Arbitrators-Lawyer vs Non-Lawyer and Sole Arbitrators vs Panel of Three(or More),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20, No.3, 2003., pp.219-232.

21) Charles J. Moxley, Jr., “Selecting the Ideal Arbitrator”, *Dispute Resolution Journal*, Aug./Oct., 2005, pp.24-28.

22) 홍성규, 「국제상사중재」, 도서출판 두남, 2002, pp.373-374.

23) 대한민국 중재법 제13조 제1항, 영국중재법 제24조 제1항, 미국 연방중재법 제10조 b항 UNCITRAL 중재규칙 제10조, ICC중재규칙 제11조.

24) IBA 윤리장전 제1조

25) 목영준, 전개논문, p.304.

와 같이 당사자들이 각자 자신의 중재인을 지명하는 방식에서는 중재인들이 자신을 선정해 준 당사자들의 대리인 의식이 있다는 비판이 자주 일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제중재에 있어 상대방이 선정한 중재인이 상대방 당사자와 어떠한 관계이며 그 중재인이 정말로 공정한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신뢰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공정성과 독립성 요건의 중요요소는 공개이다. 예비중재인이 그 선정에 앞서, 부적격으로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 중에 혹은 그 이후에 중재인기피는 이루어질 수 없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인은 공개된 사실에 근거한 반대사유로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공개요건은 중재절차의 전 과정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이다²⁶⁾. 그러나 이러한 문언만으로는 중재인이 어느 경우에 편파적이고 어느 경우에 비독립적인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구체적인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폐해로 발생되는 실보다는 당사자들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얻어지는 득이 더욱 크기 때문에 ICC나 LMAA에서도 계속하여 당사자 직접 선정방식을 고수해가고 있는 것이다.

2. 중재인의 기피

중재인은 법관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공평하고 적정하게 해결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당사자를 구속하는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므로 중재의 양당사자와 중재인간의 신뢰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²⁷⁾.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자신이 수탁한 중재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중재인이 불공정·불성실 또는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재인을 배제할 수 있는 중재인기피권(challenge of arbitrator)을 갖는다²⁸⁾. 당사자가 선정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하여 중재인기피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중재절차가 자연되어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장점을 상실하게 된다.

당사자의 중재인 기피권한은 전 세계적으로 중재법과 관련 규칙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예로서, 한국의 중재법에서도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²⁹⁾라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라는 규정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것

26) 장복희,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인 선정”, 「중재논총(1999-2000)」, 대한상사중재원, 2002, p.289.

27)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00, p.117.

28)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nd ed., Transnational Publishers an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0, p.455.

29) 대한민국 중재법 제13조 제1항.

이다. 이러한 추상성 때문에, 첫째, 구체적인 분쟁사안에 직면한 경우 기피여부의 판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 또는 분쟁사안에 대해서도 각국의 법률 및 상관습이 상이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내용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중재법에서는 중재인 기피신청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며,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의 결정은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KCAB중재규칙에서도 중재판정부에 중재인기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³⁰⁾. 그렇지만, 다른 나라 중재규칙은 일반적으로 중재기관이 중재인 기피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임의중재와 기관중재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으로, 임의중재에서는 중재인의 기피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반면에 기관중재의 경우에는 동 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중재인의 기피를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³¹⁾. 대부분의 외국중재기관들의 중재규칙은 중재인 기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중재기관에 주고 있다³²⁾. 예로서 ICC에서도 “중재인의 선정, 확인, 기피 또는 교체에 대한 중재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고, 그러한 결정의 이유는 통보되지 아니한다”³³⁾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당사자들이 ICC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중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이 접수되었으나 ICC사무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진행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중재법 상의 중재인기피절차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지므로 우리나라에서 중재가 행하여 졌다면 당연히 절차의 준거법은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되어 중재판정은 취소사유가 된다. 둘째, 중재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중재인기피절차를 악용하여 중재절차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재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가 중재인에게 기피사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중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더라도 그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이나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시할 수 없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중재인이 분쟁 당사자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범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도 중재절차중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였더라면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심을 야기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³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 국가에서는 중재인으로 하여금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중재인의 책무로 부담시켜 중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절차

30) 대한민국 중재법 제14조 및 KCAB 중재규칙 25조제2항.

31) 신군재, “한국과 중국의 중재인제도 비교분석”, 전개논문, pp.221-222.

32) 중재인 기피결정권한에 대하여 ICC, AAA, 및 LCIA는 사무국에, UNCITRAL은 중재인 선정권자에게, 그리고 CIETAC은 CIETAC 주임에게 있는 반면에 KCAB는 중재판정부에 그 권한에게 있다고 규정.

33) ICC 중재규칙 제7조 제4항.

34)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를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되었음에도 중재법 제14조에 정한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뒤늦게 중재인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중재인의 고지의무 절차위반이 있다는 사유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인기피 신청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도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진행시키고, 판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IV. 중재인 선정방식의 장단점 분석

1. 당사자에 의한 선정

당사자자치원칙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스스로 중재인을 합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중재 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을 선정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는 중재조항이나 중재부탁계약 속에 당사자가 중재인(의장중재인 포함)을 직접 선정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있어야 유효하다³⁵⁾. 분쟁당사자들의 목적은 분쟁의 주제와 당사자 주장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당사자의 의도와 논쟁을 잘 이해하며, 이들 논쟁들을 중재판정부의 다른 중재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가능한 당사자의 입장장을 받아줄 수 있도록 설득해줄 수 있는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다³⁶⁾.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³⁷⁾. 장점으로는 첫째,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잘 이해해 주고, 이를 올바르게 평가해주며, 중재판정부내에서 자신들 입장의 주창자로 활동할 것이라고 믿는 중재인을 선정함으로써 중재절차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이 중재절차 중 당사자의 주장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첫째,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두 중재인은 당사자 각각의 옹호자내지는 대리인으로 활동함으로써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는 중립적인 의장중재인밖에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중재인의 행위 및 윤리가 적절하게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중재시작 전 미리 합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잠재적으로 중재판정부가 부패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선정된 중재인이 그를 선정한 당사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문제로서 이는 미국에서 일반적인 관행인데, 중재인의 중립성 및 독립성조차도 타락시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은 중재계약에 중재인을 기명하는 기명식방식, 당사자가 지정 선정 방식 및 중재인명부교환방식 등 3가지가 있다.

35) 김상호,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도서출판 두남, 2008, p.84.

36) Douglas Earl McLaren, *op., cit.*, p.234.

37) *ibid.*, pp.235-236.

(1) 기명식 방식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 중 하나는 중재계약 속에 어느 특정인 1인 또는 수인을 애초에 기명하여 두는 방식이다³⁸⁾. 이 방식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에게 분쟁을 부탁하여 해결함으로써 중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가장 이상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식에서 하나의 문제점은 계약시점과 분쟁이 발생한 시점간의 시간상의 겹 때문에 기명된 중재인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특정 직무를 사직하거나, 아프거나, 심지어 사망을 하거나 하여 중재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중재계약자체도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법원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한국은 중재계약에서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인의 중재판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중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사이므로 그 특정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거부하면 그 중재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의 이행이 불능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³⁹⁾. 미국법원은 *Marchant v. Mead-Morrison Mfg. Co.*사건⁴⁰⁾에서 중재인선정은 중재하고자 하는 기본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 단지 하나의 단계이고, 중재하고자 하는 당사자 의도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중재합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중재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¹⁾. 또 다른 미국사건인 *Wilson v. Saffir*사건⁴²⁾은 단독중재인데, 당사자 지정중재인이 분쟁시점에서 중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당사자가 지정된 중재인 앞에서만 중재를 하도록 합의한 경우에 그 중재인이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그 중재인을 대신하여 다른 중재인을 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법원은 중재인의 존재는 본질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부수적인 것이고, 당사자들은 중재인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중재인 선정을 명령하였다⁴³⁾.

(2) 당사자 지정 선정방식

당사자 지정 선정방식은 분쟁이 발생한 연후에 당사자들이 택한 방식에 의하여 당사자가 합의로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단독중재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합의하여 선정한다. 3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로 각 당사자가 1인을

38) 곽영실·김석철, 「국제상사중재론」, 도서출판 두남, 2003, p.88.

39) 대법원판례 선고96다280판결(1996.4.12)

40) *Marchant v. Mead-Morrison Mfg. Co.*, 252 NY 284, 295, 169 NE 386, 389(1929).

41) Gabriel M. Wilner,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Callaghan & Company, 1984, p.302.

42) *Wilson v. Saffir*, 279 App Div 723, 108 NYS2d 248(1951)

43) Gabriel M. Wilner, *op., cit.*, p.309.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중재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제3의 중재인인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이다. 3인중재판정부 구성은 국제중재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즉, 3인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경우, 대부분 중재합의서에는 각 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의장 중재인으로 행동할 제3중재인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⁴⁾. 이 방식은 당사자들이 누구를 의장중재인으로 선택하여야 할지 모르는 경우 자신들이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보다 전문적이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⁴⁵⁾. 이 방식에서는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한 중재인이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고, 절차중 자신들을 조언하거나, 판정부에서 고려중인 상황을 보고하고 의장중재인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중재판정이 내려지도록 설득하는 등 자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중 한명이 중재 절차 중 의장중재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재인이 있다는 점이다⁴⁶⁾. 반면에 문제점으로는 첫째, 잠재적인 중재인 풀(pool)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⁴⁷⁾. 즉, 당사자들은 어떤 중재인이 해당 분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재인을 선정함으로써 유능한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수가 있다. 둘째,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절차가 지연되거나 심지어 중재절차진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셋째, 당사자가 지정한 중재인이 자신을 선정한 당사자를 대변할 경우 이러한 중재인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장중재인과 함께 이를 중재인의 적절한 행동은 무엇인지, 중재인이 중립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지정한 중재인이 상호간에 상대방의 결정을 상쇄시키는 의사결정을 내려 최종적인 결정은 중립적인 중재인만이 내리도록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⁴⁸⁾. 이 경우 중재판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의사결정은 1인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3인 중재인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게 된다. 예로서, *Sunkist Soft Drinks, Inc. v. Sunkist Grower, Inc.(Delmonte)*사건에서 승소당사자가 지정한 중재인이 당사자의 카운슬러와 증인을 만났으며, 사건을 준비하도록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에게 승소판정을 내린 지방법원의 결정을 제11 연방항소법원에서 승인하였다⁴⁹⁾. 미국에서는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하는데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편파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립중재인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44) Pieter Sanders, "Commentary on UNCITRAL Arbitration Rules," *UNCITRAL Yearbook*, Vol. II, 1997, p.175.

45) 신군재, "중재인선정 및 분야별 중재인 특성에 관한 연구", p.147.

46) Elizabeth Shampnoi, "The Arbitrator Selection Process and New Ethical Standards", *The CPA Journal*, December 2005, p.62.

47) Wendy Miles, *op. cit.*, p.220.

48) Elizabeth Shampnoi, *op. cit.*, p.62.

49) John P. McMahon, The Role of Party-Appointed Arbitrators-The Sunkist Case, *Dispute Resolution Journal*, Sep. 1994. p.66.

은 Commonwealth Coatings Corp. v. Continental Casualty Co.(1968)의 중재판정취소사건에서 의장중재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과거 반복적으로 건설상담을 해준 바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 판정한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중재협회규칙 제18조와 법관윤리장전(The Canon Judicial Ethics) 제33조를 근거로, 중재인은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편견을 가진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⁵⁰⁾. 한편, 영국의 대법원에서는 Sella v. Highland Railway Company (1919) 사건에서 중재의 당사자인 철도회사의 주주가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중재인 자격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하였고, Veritas Shipping Corporation v. Anglo-Canadian Cement Ltd.(1966)사건에서는 분쟁발생당시 중재인이 중재당사자 회사의 관리 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회사를 대표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의견교환을 하였다면 그는 일방 당사자와 밀접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이유로 그를 중재인의 직무로부터 배제하였다⁵¹⁾. 한국의 대법원에서는 중재인이 중재절차 진행 중에 그 중재 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대리인의 의뢰로 당해 중재사건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을 같이 하는 동종 사건의 중재를 한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수임행위는 당해 중재인을 그 중재절차에서 배제시켜야 할 정도로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유에 해당하여 기피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⁵²⁾. 이상을 살펴볼 때, 미국은 당사자 선정 중재인의 편파성을 용인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과 영국은 모든 중재인에게 공정성·독립성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사자 선정 중재인 선정방식의 문제점은 당사자들이 자신을 옹호해줄 수 있는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중재인이 자신을 선정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선정해준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의무감을 느낄지도 모르는데 있다. 당사자선정중재인의 공정성 및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중재인이 중립성을 갖도록 중재 계약 시 당사자가 지정한 중재인이 누가 그를 선정하였는지 알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와 지정중재인간에 형성되는 충성심을 막을 수 있고, 중재인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재과정 및 판정된 중재판정의 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이는 사실과 완전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당사자가 지정한 중재인이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⁵³⁾.

50) 김용일·하명근, 전계논문, p.217.

51) 상계논문, p.217.

52) 조무제, 전계논문, pp.59-60[대법원선고2003다21995판결(2004.3.12)].

53) Robert D. Taichert, "Why not Provide for neutral party-appointed arbitrators?",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57 No.4, Nov. 2002-Jan. 2003, pp.22-23.

(3) 중재인명부교환방식

중재인명부(list system) 교환 방식은 각 당사자가 그가 받아들을 수 있는 중재인으로 생각하는 3인 내지 4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이 명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한다. 각 당사자는 명부의 교환으로 중재인으로 선정될 자에 대하여 가능한 합의의 근거를 준비해 둘 수 있다⁵⁴⁾. 이 방식은 당사자로 하여금 어떤 중재인이 중재인으로 활동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견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⁵⁵⁾. 이러한 방식의 변형방식 중 하나는 중재기관에서 각 당사자에게 같은 중재인 목록을 제시하고, 당사자는 자신이 반대하는 중재인은 제거하고, 나머지 중재인후보 중에서 자신이 선호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중재기관에 반송하게 하는 방식이다.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매긴 순위에 따라 목록에서 중재인을 선정하게 된다. 또 다른 변형 방식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중재에서 원하는 어떤 기준에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이 정보는 이 기준에 적합한 후보자들을 당사자에 의해 정하도록 하거나, 중재기관에 이를 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로서, 국제상사항공합의서에 중재인은 영어가 되어야 하고, 항공분야에 경험있는 변호사이어야 한다고 자격을 제시하는 것이다⁵⁶⁾. 이 방식은 당사자 모두의 상호 협력을 요구한다⁵⁷⁾. 이 방식의 장점은 당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당사자들이 중재과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모든 중재인을 선정할 때 상대방의 합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덜 도당적인 판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 제도의 단점으로는 첫째, 잠재적인 중재인들의 풀을 좁히는 중재조항으로 잠재적으로 중재인 선정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⁵⁸⁾, 둘째, 직접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보다 신속하지 못하며,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절대적인 거절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실격시키고 중재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⁵⁹⁾.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 선정방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종종 지명한 당사자와 그 중재인 사이의 관계가 명백하고,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공정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중재인이 중립성을 갖도록 중재계약 시 당사자가 지정한 중재인이 누가 그를 선정하였는지 알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2. 중재기관에 의한 선정

중재인선정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메카니즘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선정을 실패하

54) 장복희, 전개논문, p.280.

55) Orkun Akseli, *op., cit.*, p.249.

56) Wendy Miles, *op., cit.*, p.220.

57) Douglas Earl McLaren, *op., cit.*, p.236.

58) Wendy Miles, *op., cit.*, p.220.

59) Orkun Akseli, *op., cit.*, p.249.

거나, 합의할 수 없을 경우 중립적인 중재인 선정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⁶⁰⁾. 즉,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도 그 합의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인은 중재기관에 의해 선정된다. 대부분 기관중재규칙은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중재기관이 중재판정부나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재기관에 의한 선정방식은 이들 기관들은 매일같이 국제중재에 관여되어 있어 특정 분쟁을 중재하는데 잠재적인 후보자 및 그들의 자질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⁶¹⁾. 당사자들이 3인의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심사숙고되어 중재판정이 내려지는 것을 선호할 때,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중재기관의 규칙에 따라 3명의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중재기관에 말기게 된다⁶²⁾. 이러한 방식은 상사중재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⁶³⁾. 중재기관은 당사자들이 중재인으로 선정할지도 모르는 자격있는 중재인 단을 유지하고 있다⁶⁴⁾. 이는 당사자들이 중재인 후보에 대한 정보공유가 어렵거나, 당사자합의에 의해 중재인을 선정한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이다.

상설중재기관은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위촉하여 중재인 명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체 중재규칙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들이 중재기관에 중재인선임을 위임할 경우 신속하게 중재인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상설중재기관의 자체 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기관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협회나 전문기관에 의한 지명과 비교할 때, 이들 중재기관과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규칙의 장점은 중재인후보명부에서 관련 중재인들의 자질을 미리 알 수 있고, 국제중재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하는자의 최근 기록들을 볼 수 있다⁶⁵⁾. 또한 KCAB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와 중재인간의 연락도 사무국을 통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재인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중재의 거의 대부분이 기관중재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재합의서에 중재기관만 합의를 해놓으면 그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중재인이 선정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왔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주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시 특정 중재기관에서 제시한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하면 별도의 중재인 선정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게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인

60) *ibid.*, p.249.

61) *ibid.*, p.250.

62) Gabriel M. Wilner, *op. cit.*, pp.311-312.

63) *ibid.*, p.302.

64) *ibid.*, p.302

65) 장복희, 전계논문, p.280.

선정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없거나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다음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중재인을 선정한다. 첫 번째 방식은 ICC중재처럼 각국의 국내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중재사무국에서 임의로 정하는 선정하는 방식으로 CIETAC, AAA, LCIA, 및 ICSID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세 번째 방식은 사무국에 중재인 후보자 명단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KCAB, UNCITRAL 규칙, 미국의 CPR 및 WIPO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 KCAB와 중국 CIETAC의 의장중재인선정 방식은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한 중재인명부(list system) 교환 방식의 변형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KCAB중재에서는 KCAB사무국에서 추천한 5-10명의 예비중재인 명단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보내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자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순위를 체크하여 사무국에 보내주면 순위를 합산하여 의장중재인 1명과 기타중재인 2명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다. 즉, 사무국에서 해당 사건에 정통성이 있는 전문가를 후보자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둘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사무국에서 후보자를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맡겨놓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절차지연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KCAB의 조사에 따르면, KCAB가 추천한 후보자명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⁶⁶⁾.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순위의 합산결과 동점이 많이 나온다는 점, 둘째, 말소표시에 의해 전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중재인후보자간 선호도크기의 차이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음에 따라 양당사자가 각기 표기한 중재인후보자에 대한 희망순위가 서열척도임에도 불구하고 합산처리하고 있는 통계상의 문제점, 넷째, 중재인후보자에 대한 희망순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중재인선정모형을 달리 함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섯째, 당사자들이 복수의 중재인후보자들에 대하여 같은 순위로 지명하였을 때 복수의 동순위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여섯째, 희망순위표시를 하지 않는 중재인후보자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등이 있다⁶⁷⁾. 한편, CIETAC에서는 의장중재인을 선정할 경우 양당사자가 각각 1인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양당사자가 동일하게 특정 1인을 중재인으로 추천한 경우에는 이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이 되며, 1인 이상인 경우에는 CIETAC 주임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여 이들 중에서 1명을 선정하며, 만약 중복된 중재인이 없는 경우에는 CIETAC 주임이 양당사자가 제출한 후보자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⁶⁸⁾. 이 방식은 당사자들이 어떤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서로간의 견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당사자들에게 선택권을 최대한 제공해주는 잇

66) 김경배, “중재당사자만족도조사”, 「중재」, 2005 가을호, p.45.

67) 조경곤, 전계논문, p.18.

68) CIETAC 중재규칙 제22조.

점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가 없는 한 외국 당사자들은 외국중재인을 중국 당사자들은 중국 중재인을 추천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추천한 후보가 중복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 결국은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CIETAC 주임이 의장 중재인을 선정하게 된다⁶⁹⁾.

각 중재기관마다 이처럼 중재인 선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는 어느 중재기관의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할 것인가를 정할 때 이러한 선정방식의 장단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한편, 무역거래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경우 어느 중재기관의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상대방 국가의 중재절차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 중재기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며, 그 상대방국가의 중재기관이 자기 국민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⁷⁰⁾. 이러한 불신을 해결할 방도로, 이태희(1984)는 첫째 중재인 스스로 공정한 중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둘째, 중재인 중 1인을 제3국인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세 번째로는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중립기구를 설립하여 적절한 지부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제안을 하였다⁷¹⁾. 특히 국내기업이 협상력이 약하여 외국중재기관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구성시 의장중재인은 반드시 당사자의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제3국적의 중재인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는 중재인의 국적이 독립성을 의심받을 사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⁷²⁾.

3. 국가법원에 의한 선정

중재인 선정과 관련된 법원의 개입은 중재인선정과정에 대한 합의가 종종 어려운 임의 중재에서 이루어진다. 많은 국가에서는 법과 법원이 중재절차진행을 지원하기위한 일정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의 일부로서 법원은 주로 분쟁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중재인 선정 요청을 하거나,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때 법원은 분쟁사안에 대한 관할권과 중재인 임명권한만을 가지고 있다⁷³⁾. 중국을 제외한 한국⁷⁴⁾, 미국(미국연방중재법), 영국, 프랑스, 독일 및 UNCITRAL

69) 신군재, “한국과 중국의 중재인제도 비교분석”, 전개논문, pp.218-219.

70) 조정곤, 전개논문, p.20.

71) 이태희, “중재의 공정성”, 「중재」제149호, 대한상사중재원, 1986.6., pp.2-3.

72)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 p.263.

73) 상계서, p.253.

74) 한국의 중재법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중재인의 수나 중재인 선정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한국중재법 제12조 제4항)

① 일방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때

② 양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때

③ 중재인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 기타 제3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는 때

MODEL LAW 등 대부분 각국의 중재법은 분쟁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을 하지 못하였거나 특정 상설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중재합의에 의거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중재인선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중재절차를 방해할 때, 타방 당사자는 중재지의 법에 따라 중재인 선정을 관련 국가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⁷⁵⁾.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각국 법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다르다. 즉, 어떤 법에서는 당사자가 약정된 기간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Universal Reinsurance Corp. v Allstate Ins. Co.* 사건에서 미국의 제7 순회법원은 중재합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가 부여된다고 판결하였다⁷⁶⁾.

법원에 의한 선정 방식은 특정 국가법원이 관할권과 중재인 선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중재인을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첫째, 법원은 매일같이 중재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적합한 중재인을 항상 평가할 수 없으며, 둘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V. 결 론

중재가 ADR수단으로서 지속적인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재과정이 공정하여야 하며,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판정이 내려진다는 인식의 확산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중재인의 신뢰성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국법이나 각 중재기관마다 중재인 선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는 중재인 선정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재인 선정방식을 당사자에 의한 선정, 중재기관에 의한 선정 및 국가법원에 의한 선정방식으로 나누었다.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은 다시 중재계약에 중재인을 기명하는 기명식방식, 당사자가 1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재인이 제3의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 및 중재인명부교환방식 등으로 나누어 각 선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기명식으로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기명된 중재인이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은 중재절차가 불능한 것으로 보는 반면에 미국은 당사자의 중재를 하고자 의지를 존중하여 법원에 의해 중재인을 선정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가 1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재인이 제3자의 중재인을 선정

75) Orkun Akseli, *op. cit.*, p.250.

76) *Universal Reinsurance Corp. v Allstate Ins. co.* 16 E3d 125(7th Cir. 1994)

방식에서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 모두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편파성을 인정해 되, 의장중재인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과 영국에서는 3인 중재인 모두에 대하여 엄격한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중재인명부교환방식은 잠재적인 중재인들의 풀(pool)을 좁히고, 신속하지 못하며, 일방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중재기관에 의한 선정방식은 중재합의서에 중재기관을 명시하면 각 중재기관의 규칙에 따라 신속하고 편리하게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각 중재기관마다 중재인 선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는 어느 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어느 중재기관의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정해두어야 한다. 어느 특정 중재기관의 표준중재조항 삽입은 당사자의 협상력에 달려있다. 국가법원에 의한 선정방식은 당사자가 합의로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중재인을 선정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법원이 사건에 적합한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 중재인선정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본 바와같이 완벽한 중재인선정방식이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재인 선정방식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KCAB의 금액위주로만 중재인 수를 정하고 있는데, 중재규칙 개정 시 금액과 사건의 성격, 당사자의 사건 및 중재인에 대한 전문지식 및 정보수집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탄력적 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국내연구는 주로 중재인 선정방식에 대한 각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에 대한 비교연구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연구는 각 선정방식에 장단점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 논문을 토대로 향후에는 중재인 및 중재인 선정과 관련된 사례분석이나 실증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강수미, “다수당사자중재에 있어서 중재인선정방법”, 「중재연구」 제18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8.8.

곽영실 · 김석철, 「국제상사중재론」, 도서출판 두남, 2003.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

_____, “중재당사자만족도조사”, 「중재」, 2005 가을호.

김용일 · 하명근,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인 선정에 관한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9.
- 김상호,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도서출판 두남, 2008,
- 목영준, “중재인의 권한, 책임 및 면책”, 「중재논총(1999-2000)」, 대한상사중재원, 2002.
- _____, 「상사중재법」, 박영사, 2000.
- 산업자원부·한국무역협회·대한상사중재원, 「2006년도 무역클레임 실태조사」, 2006.10.
- 신군재, “중재인선정 및 분야별 중재인 특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9.12.
- _____, “한국과 중국의 중재인제도 비교분석”, 「국제상학」, 제24권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9.12.
- 안병희, “중재인의 권한확정권한(Kompetenz-Kompetenz)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1권, 한국중재학회, 2001.
- 오원석·김용일, “ICC중재에 중재인 선정과 확인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3.
- 이강빈,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의 권한과 임시적 처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8.8.
- 이명우, “중재인의 기피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3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8.8.
- 이상옥, “국제중재법규상의 중재인선정계약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중재권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4.
- 이태희, “중재의 공정성”, 「중재」 제149호, 대한상사중재원, 1986.6.
- 장복희,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인 선정”, 「중재논총(1999-2000)」, 대한상사중재원, 2002,
- 정선주, “중재인에 대한 기피”, 「중재연구」 제17권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7.3.
- 조무제, “판례에서 보는 중재법”,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6 봄,
- 조정곤, “상사중재에서의 중재인선정과 전략게임”, 「중재학회지」 제3권, 한국중재학회, 1993.
- 주기종, “중재인의 독립성·공정성과 당사자의 기피”, 「법학논집」 Vol.15,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최혁준,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비교 연구-외국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16권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6.3.
- 한국일보, “‘세계 무역 8강’, 내실 갖춘 목표 달성을”, 2009.12.1. 및 12.5.
- 홍성규, 「국제상사중재」, 도서출판 두남, 2002.

외국문헌

Charles J. Moxley, Jr., "Selecting the Ideal Arbitrator", *Dispute Resolution Journal*,

Aug./Oct., 2005.

Douglas Earl McLaren, "Party-Appointed vs List-Appointed Arbitrators : A Comparison,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20, No.3,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Elizabeth Shampnoi, "The Arbitrator Selection Process and New Ethical Standards", *The CPA Journal*, December 2005.

Gabriel M. Wilner,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Callaghan & Company, 1984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nd ed., Transnational Publishers an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0.

John P. McMahon, The Role of Party-Appointed Arbitrators-The Sunkist Case, *Dispute Resolution Journal*, Sep. 1994.

Orkun Akseli, "Appointment of Arbitrators as Specified in the Agreement to Arbitrate",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20 No.3, 2003.

Pieter Sanders, "Commentary on UNCITRAL Arbitration Rules," *UNCITRAL Yearbook*, Vol. II, 1997.

Robert D. Taichert, "Why not Provide for neutral party-appointed arbitrators?",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57 No.4, Nov. 2002-Jan. 2003.

Wendy Miles, "Practical Issues for Appointment of Arbitrators-Lawyer vs Non-Lawyer and Sole Arbitrators vs Panel of Three(or More),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20, No.3,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Selection of Arbitrator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Koon-Jae, Shin

The role of the arbitrator is so significant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at its success or failure may depend on the credibility of the arbitrator. It has long been understood that the ideal arbitrators are should be independent, unbiased, and have the requisite legal and/or technical expertise and experience for the case at hand. Arbitrators may be selected either by agreement of the parties, by appointment by arbitral institution or by a national court. This article outlines the main method of selecting the members of the tribunal plus some of the benefits and burdens of each method.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s of appointing arbitrators is by agreement of the parties. This approach is very attractive because it allows parties to submit a their dispute to judges of their own choice, that they also agree on. Most arbitral institutions have a panel of arbitrators and their arbitral rules. So, if disputants agree on a specific arbitral institution, they can settle their disputes by arbitration easily and quickly. If disputants are unable to agree on arbitrator(s) or a specific arbitral institution, method of selecting arbitrator(s) by national court must be employed.

Key Words : arbitrator(s), selection of arbitrators, appointment by arbitral institution, selection of arbitrator by national court